

FTA 원산지규정의 주요 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方浩慶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적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의 추구를 뒷받침할 政策研究 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17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으며, 1992년 1월 地域研究를 주요 업무로 추가하였습니다.

본 연구원은 현재 40여 명의 박사급 연구진을 포함하여 70여 명의 연구원이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APEC발전대책, 새로운 시장지역여건, 동북아경제협력 및 통일 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쳐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國際巨視金融室, 貿易投資政策室(DDA연구팀, FTA연구팀, APEC연구팀), 세계지역연구센터(중국팀, 일본팀, 유럽팀, 미주팀, 동서남아팀), 東北亞경제협력센터,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北京事務所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구소(KEI)를 두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정부의 유관부처에 제공되며, 장·단기 研究報告書, 월간『KIEP세계경제』, 반년간『對外經濟研究』 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새로운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연구성과는 본 연구원 KIEP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ep.go.kr>)를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경제질서의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무대에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대외경제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정책과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院長 安 忠 榮

對外經濟政策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 (02) 3460-1178, 1179 / FAX : (02) 3460-1144
URL : <http://www.kiep.go.kr>

FTA 원산지규정의 주요 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方浩慶



국문요약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란 특정제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말한다. 원산지규정이 FTA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주된 이유는 원산지 규정이 각 국가들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불명확성과 복잡성, 그리고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상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잡한 원산지규정은 역내 회원국들에게 여러 가지 행정절차와 제품 생산에 관련된 비용을 유발시킨다. 행정비용은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비용으로써 국가마다 상이한 증명절차(mechanism)는 기업들에게 가지각색의 비용을 부담시킨다. Koskinen(1983)의 연구에 따르면 EC-EFTA하에서 핀란드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을 받기 위한 행정비용은 수출 거래액에서 1.4~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Holmes & Shephard(1983)는 EFTA에서 EC로 수출할 때 요구되는 문서는 평균적으로 36종류, 페이지 수로는 360쪽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에 이루어진 Cadot(2002)의 연구도 NAFTA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행정비용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특히, Kruger(1985)에 따르면 미국-캐나다 FTA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캐나다 기업들이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과도한 행정비용으로 인하여 역내 산에 따른 관세혜택을 포기하는 기업의 사례도 있다고 지적한다. 물론 행정비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실증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원산지규정이 복잡하면 할수록 원산지 증명과 관련하여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관련 비용은 원산지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요구기준(technical criteria)에 의해 발생된다. 이와 관련하여 Suominen(2003)과 Augier, Gasiorek & Lai-Tong(2003), Cadot (2002), Appiah(1999)는 다양한 기술수준의 요구등과 같은 엄격한 원산지규정이 역내국가간 무역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원산지 협정안을 보면 크게 2가지의 유형, 즉 PANEURO 모델과 NAFTA 모델로 나눌 수 있다. 아시아는 고유의 특혜원산지 모델이 없고 EU의 PANEURO 모델과 NAFTA 모델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시아의 경우 EU의 PANEURO 모델과 NAFTA 모델을 함께 사용하고 있지만 NAFTA의 원산지 모델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아시아 국가들의 지역무역협정(RTA)이 주로 미국을 포함한 미주국가들과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 국가들과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EU의 PANEURO 모델의 사용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아시아 역내국가들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가 다각적으로 진행 중에 있어 PANEURO와 NAFTA 모델과 같이 아시아 국가의 원산지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아시아 국가만의 원산지 모델이 역내 특정국가간의 무역협정에서 대두되어 고유의 모델로 발전되기보다는 동아시아국가들이 참여한 고유의 통일 원산지모델의 구상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첫 과제로 원산지품목분류표 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은 FTA 추진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FTA 원산지 협상 목표로 역내무역활성화와 역외경제권으로의 개방화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인가에 내부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으며 이 목표에 따라 원산지 기본전략안을 마련해야 한다.

차 례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1
1. 원산지규정의 개념 및 일반규정	11
가. 개념	11
나. 판정기준: WTO 통일원산지 규정을 중심으로	12
다. 기타 주요 원산지규정	15
2. 원산지규정의 중요성	15
제2장 원산지규정의 목적(결정요인)	17
1. 원산지규정의 분류	17
2. 특혜원산지규정의 결정요인	18
가. 우회수입 방지	18
나. 교역확대	19
다. 외국인투자 유입	19
제3장 주요 산업의 원산지규정 특징	21
1. 자동차산업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21
2. 섬유산업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23
3. 석유화학산업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24

4. 철강산업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26
5. 농산물 및 가공식품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27
제4장 주요 지역무역협정 원산지규정안 분석	30
1. 기존 원산지규정의 특징과 장단점	30
가. 유럽: PANEURO 시스템	30
나. 미주지역: 2가지 모델	31
다. 아시아	31
2. 주요 협정별 특혜원산지 규정의 세부 특징	32
가.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Criterion: CTC)	32
나. 부가가치(Value Content: VC)	33
다. 기타 주요 특징	39
3. 기존 원산지규정의 문제점	45
4. 원산지증명제도	45
제5장 FTA 원산지 협상에서의 시사점	55
참고문헌	59
Executive Summary	61

표 차례

표 1-1.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원산지인정 결정기준	14
표 1-2.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원산지인정 완화기준	15
표 3-1. 자동차산업 원산지규정의 특징	22
표 3-2. 섬유산업 원산지규정의 특징	23
표 3-3. 석유화학산업 원산지규정의 특징	25
표 3-4. 철강산업 원산지규정의 특징	26
표 3-5. 농산물 및 가공식품 원산지규정의 특징	28
표 4-1. 협정별 부가가치기준의 특성	35
표 4-2.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원산지 인정기준	37
표 4-3. 협정별 원산지 완화조항의 특징	42
표 4-4. 지역별 원산지 조항의 주요 특징 비교	44
표 4-5. 기관 발급제와 자율증명제의 특징	47
표 4-6. 기관 발급제와 자율증명제의 장·단점	48
표 4-7. 자율증명제 도입시 소요 항목별 단가	51
표 4-8. FTA 대상국 수출입 건수(2002년 기준)	52
표 4-9. 원산지 증명의 각국 사례	53
표 4-10. 원산지 증명의 국가별 대응방안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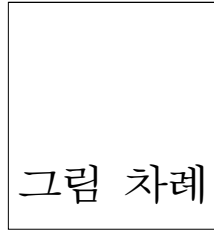


그림 4-1. 협정별 세번변경기준의 종류33

제1장 서론

1. 원산지규정의 개념 및 일반규정

가. 개념

- 물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수출입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생산·제조·가공된 나라, 동식물의 경우 성장한 나라를 의미함.
 - 주로 원재료의 공급국 및 주요 공정 수행국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고, 자본 투자국·디자인 수행국·기술 제공국·상표 소유국 등과는 무관한 개념임.
 - 일반적으로 원산지는 정치적 정체성을 지닌 국가를 의미하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과 중국 귀속 후의 홍콩 등과 같이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란 회원국이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데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인 판정이라 할 수 있음. 즉 특정제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말함.
 - 수출입품에 표시되는 제조국, 조립국, 수출국, 경유국, 생산국, 가공국 등이 일반적인 개념이라면, 원산지는 원산지규정에 근거하여 적용되고 각종 무역정책수단(Trade Measures)에 활용되는 법적·행정적 개념으로 전자와 구분됨.
 - 일반적으로 원산지는 정치적 정체성을 지닌 국가를 의미하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과 중국 귀속 후의 홍콩 등과 같이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특혜원산지 협정은 상품의 시장접근과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무역정책수단으로서 기본 목적은 역외수입의 억제를 통한 역내수입 확대에 있음.
 - 원산지 인정 규정이 엄격하면 할수록 무역전환에 따른 부정적인 경제 효과가 크며 무역과 투자의 왜곡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나. 판정기준: WTO 통일 원산지규정을 중심으로

- 교토협약(Kyoto Convention)에서는 원산지 인정 기준으로서 완전생산(wholly obtained or produced)과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1) 완전생산 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

- 완전생산 기준은 어느 한 나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생산되는 경우를 말함.
 - 예를 들어 한 나라에서 수확하고 채취한 식물이나 광물이라든지, 혹은 한 나라에서 출생하고 사육한 동물의 경우와 같이, 한 나라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가지고 처음부터 그 나라에서 가공한 완제품의 경우 원산지는 바로 그 나라가 되는 것임.

2) 실질적 변형 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한 나라에서 가공하는 경우와 같이 생산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의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 기준으로 판정함.
 - 실질적 변형 기준은 규정이 까다롭고 복잡하며 이는 세 번변경 기준(CTC), 부가가치(value content) 기준, 특정가공공정 기준(Specific Process Rules)으로 세분화시킬 수 있음.

- 원재료의 실질적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 세번변경 기준을 원칙으로 부가가치 기준 또는 특정가공공정 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세 가지 기준을 각각 조합하여 적용하기도 함.

가) 세번¹⁾변경 기준(Traiff Shift Rules)

- 세번변경 기준이란 수입되는 원료(Input)의 세번과 완제품(Output)의 세번을 비교하여 세번이 일정단위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여 원산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함.
 - 세번변경 기준은 국제통상코드인 HS 품목번호(세번)에 근거하므로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함.
 - 예를 들어 라이트의 원산지가 HS 6단위 세번변경 기준이라고 할 때, 일본산 라이트 노즐 및 부품(HS 9613.90.1000)을 가지고 중국에서 일회용 라이트(HS 9613.10.0000)를 생산하는 경우 HS 6단위가 변하므로 원산지는 중국이 되는 것임.
 - 만약 라이트의 원산지가 HS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이라 한다면 이 경우 4단위 세번이 변하지 않아 원산지는 일본이 됨.

나) 부가가치 기준(Value Added Rules)

- 부가가치 기준이란 완제품의 전체 가치 중에서 최종 공정을 수행한 나라에서 일정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함.
 - 이 기준은 논리적으로는 원산지의 개념에 가장 부합한 기준이나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에 민감하고, 세관이나 무역거래자에게 서류 제출 및 확인 등 추가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수입재료의 가격(CIF 기준)을 완제품의 가격(FOB 기준)으로 나누어서 구함.

1) 세번은 총 10단위임. 6단위까지는 세계공통이므로 품목별 원산지협상은 보통 세번 4단위 또는 6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다) 특정가공공정 기준(Specific Process Rules)

- 실질적 변형을 판정하는 또 다른 기준이 특정가공공정 기준임.
 - 가장 객관적인 기준으로 제조공정 중 특정공정을 수행하거나 특정부품을 사용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함.
 - 본 기준을 적용할 경우의 예를 들면, 커피는 볶음공정을 수행한 나라가 원산지이고, 의류는 재단을 수행한 국가가 원산지이며, TV는 브라운관을 생산한 나라가 원산지로 판정됨.
- <표 1-1>은 2001년까지 체결된 지역무역협정(RTA)의 원산지 인정 기준을 나타낸 표임.
 -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 모두 세 변변정 기준(CTH)을 주요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기준의 경우에는 MC(import content)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1.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원산지 인정 결정기준

지역무역협정	원산지인정기준						Tolerance Rule
	세번 변경	부가가치				특정가공 공정	
		Total	MC	DC	VP		
관세동맹(6)	6	4	2 (40~60%)	2 (35~60%)	-	-	3
자유무역협정(87)	83	75	68 (60~30%)	7 (60~25%)	67	74	65

주: MC(import content)는 당해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데 허용되는 수입부품 및 재료의 금액이나 수량의 상한을 부과하는 수입산함량 기준을 말하고, DC(domestic content)는 원산지를 부여하는 데 요구되는 국내 혹은 역내 부가가치 포함비율의 최소비율을 의미함. 그리고 TT는 기술테스트 방법을 의미하고 Tolerance Rule은 비역내산 원료의 일정비율을 허용하는 기준을 말함.

자료: World Trade Organization(2002)

다. 기타 주요 원산지규정

- 한편 원산지 판정 기준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최소허용조항(de minimis), roll-up(or absorption)원칙, 누적(cumulation)조항 등을 사용함.
 - 누적(cumulation)조항은 생산자들이 최종제품의 특혜적 지위를 상실함 없이 특정 원산지로부터 비원산지의 재료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최소허용조항과 함께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2 참고).

표 1-2.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원산지 인정 완화 기준

지역무역협정	최소허용조항	누적조항			ROLL-U P
		Bilateral	Diagonal	Full	
관세동맹(6)	3	6	0	0	2
자유무역협정(87)	85	87	58	8	81

자료 : World Trade Organization(2002)

- <표 1-2>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 EU와 EEA협정 등에서는 완전누적(full cumulation) 기준을 인정하여 역내 참가국 중에서 어느 한 국가로부터 원산지를 부여받은 부품은 역내 모든 국가가 특혜적 지위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원산지규정의 중요성

- 원산지규정이 국제무역상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주된 이유는 원산지규정이 각 국가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불명확성, 복잡성,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상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 예를 들면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의 부과, 쿼터 적용 등 원산지의 식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반무역 관련 조치에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

해 지나치게 엄격한 조건이 설치되거나 국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됨으로써 간접적인 수입제한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음.

- 결국 기업들이 원재료를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하거나 제품의 글로벌 생산(Global Manufacture)을 확대하는 등 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가 가속화될수록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 결정이 매우 어렵고 중요하게 됨.

- “어디까지 생산해야 그 나라를 원산지로 결정하느냐”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임.

※ 경제의 세계화는 국가간 상호 의존의 심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음. 이는 국가간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이 다국간에 걸쳐 수행되는 현상이 보편화되는 것인데, 이 같은 현상은 비단 국가간의 상이한 비교우위를 이용하려는 기업의 전략적 차원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블록화 현상에 따른 각국의 정책적 대응결과로도 볼 수 있음. 즉 지역주의는 주요 수출국 및 역내국들에 있어 원산지규정이 지역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확보하고 역외국의 우회침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는 계기로 등장하게 됨.

- 원산지는 그 자체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지만 그것이 다른 무역정책수단과 결합하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중립성과 객관성을 지키기가 쉽지 않음.

- 예를 들어 원단을 한국에서 재단하여 중국에서 의류로 봉제한 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의류의 부가가치는 디자인에서 나오고 이는 재단공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재단한 나라인 한국이 원산지로 판정됨.

- 그러나 인건비나 설비비중 측면에서 보면 봉제한 나라인 중국이 원산지가 됨.

- 원산지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별로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 섬유쿼터가 적용되어 한국산인지 중국산인지에 따라 수출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면 원산지 판정은 핵심적인 문제로 부상함.

제2장 원산지규정의 목적(결정요인)

- 원산지규정은 협정내용 및 운영에 따라 미묘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원산지규정을 적용목적에 따라 분류할 필요가 있음.
 - 한·칠레 원산지규정의 경우 양국간 교역 활성화와 우회수입의 방지, 투자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 일·싱가포르 원산지규정은 제3국의 우회수출 방지와 역내교역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추었음.

1. 원산지규정의 분류

- 원산지규정은 그 적용목적에 따라 크게 특혜 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비특혜 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특혜 원산지규정은 EU, NAFTA, EFTA 등 특정국가간에 관세상의 특혜를 베푸는 무역지대 또는 경제구역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 GSP) 등 특정국가군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 비특혜 원산지규정은 관세특혜 여타 무역정책상 상품의 원산지를 일반적으로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임. 예를 들면 특정국가로부터의 특정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을 실시할 경우 원산지의 식별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므로 해당정책의 운영상 원산지규정이 요구되는 것임.
- 특혜 원산지규정은 자유무역협정의 일부로서 물품의 특혜관세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므로 산업과 생산방식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 따라

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특혜 원산지규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봄.

2. 특혜 원산지규정의 결정요인

- 특혜무역과 관련된 원산지규정은 대체로 원산지 판정 그 자체의 목적보다는 특혜대상이 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을 중요시함.
 - 주로 일정수준의 부가가치 부과를 의무화하고 있는 이러한 조건은 역내 생산 및 고용확충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계경제에서 무역창출 등과 같은 상당한 자원배분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직접투자의 증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결국 원산지규정의 특혜조건 충족기준에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경제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특혜 원산지규정은 체결상대국의 여러가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후 그 국가와의 특혜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원산지규정의 결정에 있어 우회수입 방지, 교역 확대, 외국인투자 유입 등의 목적들을 면밀히 분석함.

가. 우회수입 방지

- 역내무역에 특혜관세를 양허하는 경우 역내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해서만 낮은 관세가 허용되는데, 역외국의 역내국을 통한 우회수출 방지는 원산지규정에 있어 주요사항으로 고려됨.
 - 양국간 특혜 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제3국의 간접적 진출로 인해 저하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국간 원산지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이중자물쇠(Double Lock)’의 수단으로서 원산지규정을 이용함.
 - 결국 우회수입 방지를 위한 원산지규정의 강화는 이 체결국들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삼고 있는 역외국가들에 대하여 막대한 영향을 끼침.

- 원산지를 통한 역외국의 역내국 시장접근에 대한 규정 강화는 다음에서 언급할 외국인직접투자의 직접적 요인이 됨.

나. 교역확대

- 특혜 무역협정의 체결은 역내 시장의 규모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원산지 규정에 의거하여 역외국들의 제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므로 회원국간 교역 확대를 통한 무역창출효과가 발생하게 됨.

- 회원국간 교역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비회원국으로부터 관세가 낮은 회원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수입품이 역내 회원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말아야 함. 결국 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원산지규정이 중요함.

※ 결국 특혜무역협정 체결로 발생할 수 있는 역외국의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간 원산지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역내교역 확대와는 상반(trade-off)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다. 외국인투자 유입

- 체결국이 아닌 역외국가는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인위적 경쟁력의 저하를 역내 직접투자 등을 통하여 상쇄하려고 함. 결국 직접투자에 있어 원산지 규정의 내용은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함.

- 과거 NAFTA 출범에 앞서 일본의 대멕시코 직접투자가 증가했던 실례가 있음.

- 엄격한 원산지규정은 우회수입 방지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만약 부가 가치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해외투자 유치에 있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임.

- 한편 역외국이 무역전환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역내국으로 생산기지를 인위적으로 이전함에 따라 비용 면에서 비효율적인 곳에 투자가 발생하는 이른바 투자구조의 왜곡이 나타날 수도 있음.
- 실제 주요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규정으로부터 우회수입 방지, 역내 가공 및 교역의 촉진 그리고 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인 등의 목적에 따른 특징을 구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려움.
- 그 주요 이유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첫째, 미국, 싱가포르, 칠레, 멕시코 등 각각 어느 한 국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상대 체약국가들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 국가들이 원산지규정을 통하여 의도하는 목적은 일관되지 않고 서로 다를 수 있음.
 - 둘째, 원산지규정의 주요 목적으로 생각되는 우회수입 방지, 역내 가공 및 교역의 촉진 그리고 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인 등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원산지규정의 내용이나 체계와 관련하여 배타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상호 보완성이 더욱 강하기 때문임.

제3장 주요 산업의 원산지규정 특징

- 본 장에서는 자동차, 섬유, 석유화학, 철강, 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 주요 산업별로 원산지규정의 체계와 특징을 분석하고자 함.

1. 자동차산업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 주요국들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규정에서 자동차산업의 핵심쟁점은 수입된 엔진을 장착한 새시에서 완성차 조립을 한 경우 엔진장착국에 원산지를 부여할 것인지, 완성차 조립국에 원산지를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 한국, 미국, 일본을 포함한 15개국의 경우에는 엔진장착국에, EU, 브라질, 터키, 인도 등은 완성차 조립국에 원산지를 인정하자는 입장임.
 - 우리나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조립에 대해 원산지 부여를 반대하지만, 소방차를 비롯한 특수차량은 그 용도가 완전히 변경되므로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지금까지 체결된 FTA(또는 RTA)에서 자동차산업의 경우 CTH기준과 함께 부가가치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제법의 경우 45%, 직접법의 경우 30% 이상의 비율을 요구하고 있음.
- <표 3-1>은 주요 자유무역협정 중에서 자동차산업 원산지 규정의 주요 특징을 요약 정리한 것임.

표 3-1. 자동차산업 원산지규정의 특징

구 분	자 동 차
일본- 싱가포르 FTA	- 제87류(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는 세번변경기준을 사 용함 - 제87류 이외의 내용 없음
미국- 싱가포르 FTA	- 제8701호~제8706호의 트랙터, 수송용 자동차,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용도차량, 엔진을 갖춘 샤시는(제8705호 제외) 직접법으로 30%이상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곳 - 제8707호(차체)는 세번변경기준 또는 직접법으로 30% 이상 역내부가가 치가 발생했을 경우
멕시코- EU FTA	- 제87류(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품과 부속품)는 세 번변경 기준 또는 이전공정에서의 부가가치 합이 전체 공정의 40%를 넘지 않을 경우
칠레- EU FTA	- 제87류의 이전공정에서의 부가가치의 합은 맥-EU 원산지 협상과 같이 전체 공정의 40%를 넘지 않아야 원산지로 인정함 - 제8709호(자주식 작업차와 트랙터 및 이들의 부분품), 제8710호(전차와 장갑차량)는 세번이 변경되었거나, 이전 공정에서의 부가가치의 합이 전 체 공정의 30% 혹은 40%를 넘지 않을 경우 - 제8711호(모터사이클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및 사이드카)는 이전 공 정의 부가가치의 합이 전체 공정의 40%를 넘지 않으면서 세번이 변경되 었을 경우, 혹은 이전 공정의 부가가치의 합이 전체 공정의 20%(50cm³ 를 초과할 때는 25%)를 넘지 않을 경우
한국- 칠레 FTA	- 제87류(철도 또는 궤도용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의 경우 제 8701호~8705호는 공제법 45% 이상, 직접법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 가 발생하였을 경우 - 제8706호(엔진을 갖춘 샤시)는 세번변경기준에 의해, 제8707호~제8716 호의 차체, 부분품과 부속품, 자주식의 작업차와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및 그 부분품은 세번이 변경되었을 경우와, 공제 법 45% 이상, 직접법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섬유산업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 섬유산업 원산지규정에 있어서 주요 특징은 방사, 방출, 제직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직물의 염색 및 날염공정 수행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직물 생산국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임
 - 한국, EU, 호주 등 14개국의 경우 염색 및 날염공정 수행국을 그리고 미국, 브라질, 캐나다 등 8개국은 직물생산국에 원산지를 주장하고 있음.
 - 멕시코·EU, 칠레·EU FTA에서는 소면(梳綿), 소모(梳毛) 등 면화나 양털 찾기 전의 공정이 행해진 곳을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으나 소면과 소모는 실을 찾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정으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표 3-2>는 주요 자유무역협정에서 섬유산업 원산지규정의 특징을 요약 정리한 것임.

표 3-2. 섬유산업 원산지규정의 특징

구 분	섬 유
일본-싱가포르 FTA	- 제50류(견)는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함 - 제5005호(견방사)는 제28류에서 제32류까지의 화학생산물과 제4701호, 제4706호, 제5001호, 자연산/인조 섬유조직, 견웨이스트로부터 세번이 변경된 경우
미국-싱가포르 FTA	- 제5001호~제5003호(누에고치, 생사, 견웨이스트)는 세번변경기준에 의해 원산지로 인정함 - 제5004호(견사)는 제5005호~제5006호를 제외한 호로부터, 제5005호(견방사)는 제5004호~제5006호를 제외한 호로부터, 제5006호(견사·견방사)는 제5004호~제5005호를 제외한 호로부터 세번이 변경된 경우 - 제5201호~제5207호의 면, 면웨이스트, 면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표 3-2〉 계속

	분의 85이상인 것에 한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 면 재봉사와 면사는 제5401호~제5405호, 제5501호~제5507호를 제외한 류에서 세번이 변경된 경우
멕시코-EU FTA	- 제50류~제53류의 실크, 양모·섬유모 또는 조수모·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면,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은 세번변경기준에 의해, 제5003호의 경우 견웨이스트의 소면, 소모 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 제52류(면의)의 경우 세번변경기준에 의함
칠레-EU FTA	- 제50류(견)는 세번변경기준에 의해, 제5003호의 경우 소면 또는 견웨이스트의 소모가 행해진 국가 - 제5004~제5006호의 견사, 견방사는 소면, 소모 등 면화 및 양털 찾기 전의 공정이 행해진 곳
한국-칠레 FTA	- 제50류(견)는 매우 세분화된 원산지 기준을 규정함 - 제51류(모), 제52류(면), 제60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는 세번변경기준에 의해, 제61류(의류와 그 부속품), 제62류(의류와 그 부속품), 제63류(방직용 섬유 제품 및 냅마)는 우리나라 또는 칠레에서 절단, 재봉, 조립된 것에 한하여 세번이 변경된 경우

3. 석유화학산업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 석유화학의 경우 큰 쟁점사항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CTH기준을 따르며 부가가치기준을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표 3-3〉은 주요 자유무역협정에서 석유화학산업 원산지규정의 특징을 요약 정리한 것임.

표 3-3. 석유화학산업 원산지규정의 특징

구 분	석유화학
일본-싱가포르 FTA	- 제2704호(코크스와 반성코크스(석탄, 갈탄 또는 토탄으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응결 여부를 불문한다) 및 레토르트 카본), 제2707호(고온 콜타르의 증류물과 기타 유사물품, 제2801호(플루오르, 염소, 브롬 및 요드)는 세번변경기준에 의함 - 제2803호(탄소)는 세번이 변경된 경우와 투입된 재료의 가치가 제품가치의 60%를 넘을 경우
미국-싱가포르 FTA	- 제2710호(석유와 역청유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 및 웨이스트 오일)는 세번이 변경된 경우,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화학적 반응에 의해 실질적 변형을 가져온 경우
멕시코-EU FTA	- 제27류(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는 세번변경기준에 의함 - 제2707호~제2715호의 물품은 세번이 변경되었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지만 이전 공정의 부가가치의 합이 전체 공정의 50%를 차지하지 않는 경우
칠레-EU FTA	- 제27류(광물성 연료, 광물류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는 세번변경기준에 의함 - 제2707호(고온 콜타르의 증류물)는 정제 혹은 한 가지 이상의 특수한 공정을 거쳤거나, 세번이 변경되었거나, 이전 공정에서의 부가가치가 전체 부가가치의 50%를 넘지 않는 경우 - 제28류(무기화합품 및 귀금속)는 세번이 변경되었거나, 같은 물품에 해당하는 호로 변경되었더라도 이전 공정에서의 부가가치가 전체 부가가치의 20%를 초과하지 않거나, 이전 공정의 부가가치가 전체 부가가치의 40%를 넘지 않는 경우
한국-칠레 FTA	- 제28류(무기화합품 및 귀금속), 제29류(유기화합품)의 경우, 세번이 변경되었거나, 혹은 공제법의 경우 45%이상, 직접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 제30류(의약품)는 세번변경기준에 의함 - 제3002호(면역혈청과 기타 혈액분획물)는 세번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공제법의 경우 45%, 직접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4. 철강산업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 철강부문 원산지협상의 쟁점사항은 철강의 코팅에 대해서 원산지를 부여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이러한 공정에 대해서 FTA 원산지규정은 각 품목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음.
 - 일반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EU, 브라질 등 15개국의 경우 코팅공정 수행국으로 주장하는 반면 미국, 아르헨티나 등 4개국 경우 강판 생산국을 원산지로 주장하고 있음.
- 철강부문의 경우 주로 CTH기준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변경된 것을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음. 한국-칠레 FTA의 경우 품목에 따라서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 직접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음.
- <표 3-4>는 세계 주요 자유무역협정에서 철강산업 원산지규정의 특징을 요약 정리한 것임.

표 3-4. 철강산업 원산지규정의 특징

구 분	철 강
일본-싱가포르 FTA	- 제7208호~제7209호(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압연/냉간압연한 것에 한하며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제7301호(철강제의 강시판(천공 및 조립 여부 불문)과 용접된 형강)는 세번변경기준에 의함
미국-싱가포르 FTA	- 제7201호(선철과 스피그라이즌), 제7202호(페로알로이), 제7203호(철 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등은 세번변경기준에 의함
멕시코-EU FTA	- 제7208호~제7216호의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의 경우 주괴, 제7206호, 제7207호의 반제품 또는 다른 기본적인 형태로부터 세번이 변경되었을 경우

〈표 3-4〉 계속

구 분	철 강
칠레-EU FTA	- 제7208호~제7216호는 주괴 혹은 제7216호(주괴 혹은 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철과 비합금강)의 일차형상물로부터 세 번이 변경된 경우
한국-칠레 FTA	- 제7201호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해당 물품으로 변경된 경우, 제7202호~제7204호의 경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해당 물품으로 변경된 경우

5. 농산물 및 가공식품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 농산물의 원산지규정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임.
 - 가공식품의 경우 투입품과 산출물이 충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와 가공공정이 원산지를 부여할 정도로 포괄적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항임.
 - 또한 ① 가축의 도축공정, 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잡은 수산물의 원산지, ③ 설탕의 정제공정, ④ 커피의 볶음공정, ⑤ 우유 조제품 생산, ⑥ 정제유 생산 등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논의되고 있음.
- 농업부문은 WTO 원산지규정의 협상과정에서도 가장 미결 쟁점사항이 많은 부분으로 농수산물분야에서 지금까지 합의된 275건 외에 117건이 아직 결정되지 못하고 있음.
- 〈표 3-5〉는 세계 주요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산물 및 가공식품 원산지규정의 특징을 요약 정리한 것임.

표 3-5. 농산물 및 가공식품 원산지규정의 특징

구 분	농산물 및 가공식품
일본-싱가포르 FTA	- 제2106호(조제식료품), 제2203호(맥주), 제2206호(기타 발효주), 제2207호(에틸알콜)은 세번이 변경된 경우와, 이전 공정에서의 부가가치의 합이 전체 공정의 40% 이하인 경우 - 소호2208.70(리큐어,감로주)는 세번이 변경된 경우와, 이전 공정에서의 부가가치의 합이 전체 공정의 40% 이하인 경우
미국-싱가포르 FTA	- 제1905호(베이커리 제품), 제2002호(조제, 저장처리한 토마토), 제2004호(조제, 저장처리한 채소), 제2006호(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 과일, 견과류, 과피), 제2101호(커피, 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제2102호(호모, 기타 단세포 미생물 및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제2203호(맥주)는 세번변경기준에 의함. - 제2105호(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는 제4류와 소호1901.90으로부터의 우유고형물 무게의 10%를 넘는 유제품을 제외한 다른 소호로부터 세번이 변경된 경우
멕시코-EU FTA	- 제1901호의 맥아엑스는 제10류의 곡물에서 세번이 변경된 경우와 이전 공정에서의 부가가치가 30%를 넘지 않고 완전 생산된 경우 - 제1904호(콘플레이크와 기타 유사 조제식료품)은 세번이 변경된 경우에, 모든 시리얼과 밀가루의 경우에는 전 공정이 한 국가에서 이루어지며, 이전 공정에서의 부가가치의 합이 30%를 초과하지 않는 제17류의 물질로부터 세번이 변경된 경우
칠레-EU FTA	- 제1901호(맥아엑스와 그 조제식료품) 중 맥아엑스는 제10류의 씨리얼로부터 세번이 변경된 경우 - 제2006호(설탕 저장처리한 채소)는 모든 재료의 부가가치가 이전 공정에서의 부가가치의 30%를 넘지 않는 경우 원산지로 인정함. - 제2009호(과실쥬스와 채소쥬스) 중 감귤쥬스는 완전생산되어야 하며,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부가가치의 합이 전체 공정의 30% 이하인 경우 - 제2202호(설탕 및 기타 감미료)는 세번이 변경된 경우와, 부가가치의 합이 전체공정의 30% 이하인 경우, 파인애플과 라임, 포도를 제외한 사용된 모든 과실즙이 완전생산기준에 의해 생산될 때

〈표 3-5〉 계속

구 분	농산물 및 가공식품
한국-칠레 FTA	- 제11류(제분공업의 생산물), 제15류(동식물성유지)는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 직접법의 경우 30%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 제1704호(설탕과자), 제1806호(조제식료품), 제19류(곡물·분·전분)는 세번이 변경되었거나,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 직접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 제22류(음식·알콜 및 식초)에서 제2001호(물과 얼음 및 눈)을 제외하고는 세번이 변경되었거나,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 직접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제4장 주요 지역무역협정 원산지규정안 분석

1. 기존 원산지규정의 특징과 장단점

- 본고에서는 크게 유럽과 미주 및 아시아 지역으로 구분하여 이들 지역내의 특혜무역 원산지규정을 분석하고 있음.

가. 유럽: PANEURO 시스템

- EU 회원국들의 역내 혹은 역외 국가들간 체결된 특혜원산지 협정은 여러 협정문 중에서 가장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이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특혜원산지협정안을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며 아울러 동유럽국가들에게 diagonal cumulation 조항을 통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임.
- PANEURO 특혜원산지 협정은 여타 협정안들처럼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예외조항을 포함시킨 HS 4단위의 세번변경과 VC, TECH 등으로 구성됨.
 - 1997년 이후부터는 PANEURO 모델이 EU와 체결하는 신규 FTA 국가들의 원산지 협정안에 적용되고 있음. 즉 Euro-Mediterranean Association Agreements, EU-슬로베니아 FTA, 그리고 남아프리카, 멕시코, 칠레와의 FTA 등이 있음.
 - 최근 체결된 EFTA의 멕시코, 싱가포르의 특혜원산지협정안에서도 PANEURO 모델이 적용되었음. 단, EFTA-싱가포르의 원산지협정에서는 플라스틱, 고무, 섬유, 철강과 몇 가지 기계품목에 대해서는 PANEURO 모델안(import content)과 다른 기준안을 함께 제시하였음.

- PANEURO 모델은 1997년 이전의 특혜원산지협정안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음. 단, 차이점을 지적한다면 기존의 원산지 협정안에는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안이 품목별로 한 가지만 존재하였으나 PANEURO 모델에서는 원산지를 충족시키는 조항에 품목별로 대안(alternative) 조항이 마련되었다는 것임(총 품목의 25% 정도).

나. 미주지역: 2가지 모델

- 첫 모델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Latin American Integration Agreement (LAIA)인데 LAIA 모델은 Andean Community(CAN)과 Caribbean Community (CARICOM)에서 사용되고 있음.
- 다른 모델은 NAFTA 모델로써 미국-칠레, 멕시코-코스타리카, 멕시코-칠레, 멕시코-볼리비아, 멕시코-니카라과, 멕시코-Northern Triangle(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칠레-캐나다, 멕시코-콜롬비아-베네수엘라(G3), 한국-칠레 등의 FTA임.
 - NAFTA 원산지에서의 세번변경 기준은 크게 HS 2단위, 4단위, 6단위, 10단위로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아울러 Regional Value Content (RVC) 또는 특정한 기술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음.
 - NAFTA의 원산지 모델은 범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원산지규정 모델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음.

다. 아시아

- 아시아 지역의 특혜원산지 협정안은 유럽과 NAFTA의 모델이 혼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유럽, 미주지역의 모델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음.
 - 한국-칠레와 JESPA의 원산지 협정안을 보면 많은 품목이 HS 4단위의 단순 세번변경에 기초하고 있음.

- AFTA와 방콕협정, 미국-싱가포르, 한국-칠레는 NAFTA의 모델인 RVC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반면, JSEPA는 PANEURO에서 사용되는 VC(Value Content)를 도입하고 있음.
- 아시아 지역에서 NAFTA의 모델이 일반적인 이유는 아시아 지역이 그동안 미주 지역과 상대적으로 많은 FTA를 체결하였기 때문임. 따라서 EU와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에서는 EU의 PANEURO 모델을 강요할 수 있음. 한편 최근 아시아 역내 국가들간 양자간 특혜무역협정 논의가 급증함에 따라 PANEURO와 NAFTA 모델과 상이한 아시아만의 특혜원산지 모델이 자연스럽게 대두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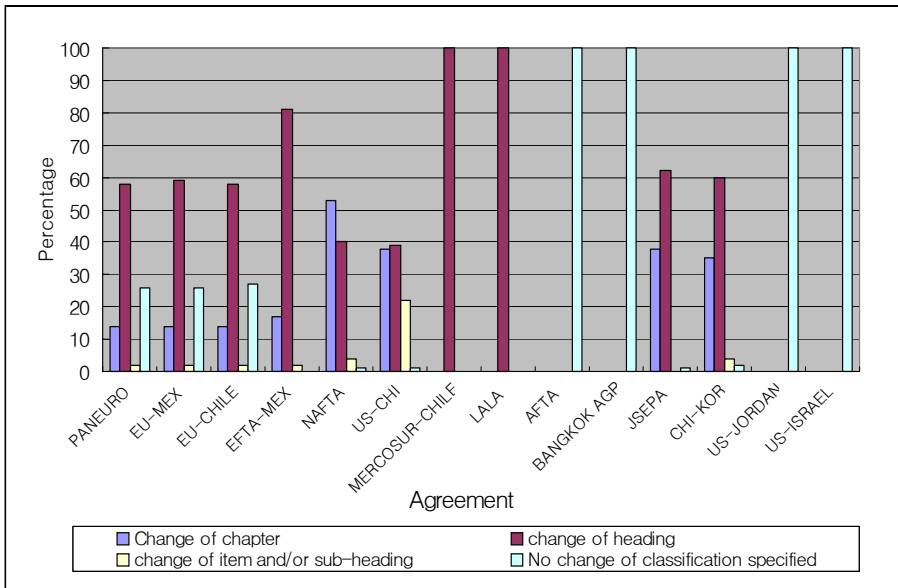
2. 주요 협정별 특혜원산지 규정의 세부 특징

가. 세번변경 기준

- 유럽의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Criterion: CTC)에서 HS 4단위변경방식이 모든 특혜원산지 협정에서 주요 기준으로 채택되고 있는 반면, NAFTA에서는 HS 4단위변경과 함께 2단위 변경기준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림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요르단, 미국-이스라엘 FTA에서는 특정 세번변경 기준안을 제시하지 않고 VC(Value Content)에 기초하고 있음. 이는 미국의 정치적인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서 원산지 협상이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 또한 중요하게 작용됨을 추측할 수 있음.
- 한국-칠레, 일본-싱가포르의 경우, 세 번변경 기준안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데, 특히 NAFTA 모델과는 달리 4단위 세번변경에 기초하고 있음.
 - AFTA를 포함한 여타 아시아 국가들의 세번변경기준은 특정세번변경 대신 VC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번변경 기준에서는 NAFTA를 제외한 모든 협정안이 HS 2단위, 6단위 기준안보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안을 더 선호하고 있음.

그림 4-1. 협정별 세번변경 기준의 종류



자료: WTO(2002), 각국의 원산지 협정안.

나. 부가가치

- 부가가치(Value Content: VC)는 일반적으로 세번변경 기준(CTC)과 함께 사용되거나 세번변경 기준의 대안으로 독립적으로 사용됨.
- VC는 크게 MC와 RVC로 구분할 수 있고, VC의 일반적 수준은 40~50%이나 PANEURO와 SADC에서는 13~30% 정도로 낮게 부과되고 있는 품목들도 있음.
 - 특히 <표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VC를 계산하는 방법이 협정안마다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 수출업자들이 원산지 기준안을 충족시킬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유럽의 PANEURO 모델은 MC(Import Content)에 기초하여 50~30%의 기준을 부과하고 있고, 특히 다른 지역들의 협정안과는 달리 동일한 Ex-works price에 기초하고 있음.
 - 하지만 PANEURO 모델을 CTC(HS 2단위, 4단위, 6단위 등), TECH, VC 등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경우 매우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를 통해 EU가 외부적으로는 개방형을 추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블록화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시사함.
- NAFTA 모델의 경우에는 RVC 기준을 채택하고 있고 부가가치기준율과 계산방식이 유럽에 비해 다양함을 알 수 있음. MERCOSUR의 경우에는 PANEURO 모델처럼 MC를 사용하며 계산기준으로서는 FoB를 채택하고 있음.
 - NAFTA 모델 또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보면 PANEURO 모델처럼 복잡한 원산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FoB 기준의 경우 계산이 간단한 반면, 이를 채택할 경우 특수관계자 사이에 가격담합의 우려가 있음. 반면 미국-칠레, 미국-싱가포르, 한국-칠레 등의 부가가치 계산기준에서 사용되는 직접법(build-up), 공제법(build-down)의 조정가격(adjusted value)은 계산상 복잡한 면이 있으나 가격담합의 우려는 없음.
 - 특히, 자동차 품목 중 수송차와 소형 트럭의 경우에는 62.5% 이상의 높은 부가가치를 부과하고 있음. 수송차와 소형트럭의 변속장치(transmissions), 수송차와 소형트럭 이외의 다른 차종과 자동차부품의 부가가치 비율도 60%로 규정함으로써 다른 품목에 비해 높게 부과하고 있음.
- 아시아의 경우에는 PANEURO와 NAFTA 모델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명료한 형태를 지니고 있음.

- AFTA와 방콕협정의 경우 단지 40%의 RVC를 충족하면 역내 원산지로 인정되는 간단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
- <표 4-1>에서와 같이 한국-칠레, 미국-싱가포르는 RVC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본-싱가포르는 NAFTA 모델의 RVC 이외에도 MC 기준을 함께 사용하고 있음.

표 4-1 협정별 부가가치기준의 특성

(단위: %)

PTA	Value Content Criterion		Basis for Calculation
	MC	RVC	
PANEURO (50)	50-30		Ex-works price
PE-(15)	50-30		Ex-works price
EU-SA	50-30		Ex-works price
EU-MEX	50-30		Ex-works price
EU-CHILE	50-30		Ex-works price
EC-Lebanon	20-50		Ex-works price
EFTA-MEX	50-30		Ex-works price
EFTA-Chile	15-60		Ex-works price
EFTA-SINGAPORE		40-80	Ex-works price
NAFTA		50-60	50 net cost; 60 transaction value
US-CHILE		35-45	35 build-up; 45 build-down
CANADA-CHILE		50-60	50 net cost; 60 transaction value
MEX-COSTA RICA		41,66-50	41,66 net cost; 50 transaction value
MEX-CHILE		40-50	40 net cost; 50 transaction value
MERCOSUR	40	60	Fob export value
CAN	50		Fob export value
LAIA	50		Fob export value
SAFTA		30-50	Factory cost
AFTA		40	Value of content
BANGKOK		40	Ex-works
JAPAN-SINGAPORE	40	60	Export value

〈표4-1〉 계속

PTA	Value Content Criterion		Basis for Calculation
	MC	RVC	
China-HongKong		30	Fob export value
US-SINGAPORE		30-65	30-35 build-up; 45-65 build down
KOREA-CHILE		30-45	30 build-up; 45 build down
Taiwan-Panama		35-70	FOB
Thailand-Australia		40-55	FOB
SADC	70-35		Ex-works price
US-ISRAEL		35	Value of materials/processes

자료 : WTO(2002), 각국의 원산지규정

□ 〈표 4-2〉는 주요 FTA 원산지규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부과기준의 조합을 나타낸 표로서 이 표에 따르면 유럽과 미주 지역의 자유무역협정체가 다른 지역들의 협정체보다 상대적으로 복잡한 원산지 인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유럽국가들은 EFTA-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복잡한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거의 동일한 인정기준을 사용하고 있음.
- 그 결과 역외국들의 유럽지역 수출은 상당한 애로점이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역내국간에는 교역이 확대되는 역외폐쇄, 역내개방 형태의 원산지 규정을 가지고 있음.
- 이에 반해 미주 지역은 G3와 멕시코-볼리비아, NFTA 등의 원산지규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체계를 보이고 있으나 유럽지역과 달리 협정체마다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음.
-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은 유럽과 미주 지역의 협정체에 비해 아주 단순한 형태의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 주요지역무역협정의 원산지 인정기준

요구기준	유럽					미주				아시아/태평양			
	PANEURO	EU-MEX	EU-CHI	EU-PRE	EFTA-MEX	NAFTA	US-CHI	MEX-BOL	LALA	AFTA	BANGKOK	JSEPA	CHI-KOR
NC	0,4	0,4	0,4	0,2		0,5	0,5	1,0					0,5
NC+ECTC	2,4	2,0	2,4	2,4									
NC+TECH	1,4	1,4	1,4	0,7			0,02						
NC+ECTC+TECH	0,0	0,0	0,0	0,0									
NC+VC	11,5	10,9	11,9	11,1						100	100		0,8
NC+ECTC+VC	1,6	1,6	1,6	1,6									
NC+VC+TECH	0,1	0,2	0,2	0,0									
NC+WHOLLYOBTAINED CHAPTER	7,6	7,6	7,6	3,2									
NC+WHOLLYOBTAINED HEADING	0,7	0,7	0,7	0,7								0,4	
SUBTOTAL	25,7	24,8	26,2	19,9	0,0	0,5	0,5	1,0	0,0	100,0	100,0	0,4	1,3
CI													
CI+ECTC						0,02							
CI+TECH					2,2								
CI+ECTC+TECH													
CI+VC													
CI+ECTC+VC						0,02							
CI+VC+TECH													
SUBTOTAL	0,00	0,00	0,00	0,00	2,2	0,04	0,0	0,0	0,0	0,0	0,00	0,00	0,00
CS	0,2	0,2	0,2	0,1		1,3	16,6	2,9					1,7
CS+ECTC	0,0	0,0	0,0	0,0		2,5	5,6	1,3				0,1	0,5
CS+TECH	1,9	1,9	1,8	1,9		0,04	0,1	0,02					
CS+ECTC-TECH	0,0	0,0	0,0	0,0		0,4	0,04	0,4					
CS+VC	0,3	0,3	0,3	0,4			0,4	4,2					2,1
CS+ECTC-VC	0,0	0,0	0,0	0,0		0,1	0,04						0,2
CS+VC+TECH	0,0	0,0	0,0	0,0				0,3					

〈표 4-2〉 계속

CS+ECTC-VC+TECH	0,0	0,0	0,0	0,0									
SUBTOTAL	2,4	2,4	2,3	2,3	0,0	4,4	22,8	9,2	0,0	0,0	0,00	0,1	4,4
CH	33,0	33,0	32,9	36,8	58,8	17,1	23,7	17,0	100,0			45,8	46,9
CH+ECTC	4,6	5,1	4,6	4,6	7,2	19,2	11,2	14,3				14,5	9,1
CH+TECH	0,0	0,0	0,0	0,3		0,02	0,3	0,2				0,58	0,1
CH+ECTC+TECH	6,7	6,7	6,7	6,7	9,0	0,1	0,4	1,7					
CH+VC	13,0	12,7	12,8	13,6	6,1	3,5	3,3	2,2				1,7	3,0
CH+ECTC+VC	0,4	0,9	0,4	0,4	0,1	0,6	0,5	0,9				0,1	0,5
CH+VC-TECH	0,0	0,0	0,0	0,0		0,1		10,0					
CH+ECTC+VC+TECH	0,02	0,02	0,02	0,02	0,03			0,9					
SUBTOTAL	57,7	58,4	57,4	62,4	81,2	40,7	39,4	47,2	100,0	0,0	0,00	62,6	59,6
CC	2,2	2,2	2,2	2,3		31,0	23,2	21,8					22,5
CC+ECTC	1,0	1,0	1,0	0,7	0,7	17,7	5,8	6,7				37,4	4,7
CC+TECH	0,04	0,04	0,04	0,04	0,1	0,02	0,1	6,3					0,1
CC+ECTC+TECH	11,0	11,3	11,0	11,0	15,4	5,8	8,1	6,2					5,7
CC+VC	0,0	0,0	0,0	0,0			0,1	0,4					1,8
CC+ECTC+VC	0,0	0,0	0,0	0,0									
CC+VC+TECH	0,0	0,0	0,0	0,0				1,2					
CC+ECTC+VC+TECH	0,0	0,0	0,0	0,0									
SUBTOTAL	14,2	14,5	14,2	14,0	16,2	54,4	37,2	42,7	0,0	0,0	0,00	37,4	34,8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CC = Change in Chapter

CH = Change in Heading

CS = Change in Subheading

ECTC = Exception to 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VC = Regional Value Content

TECH = Technical Requirement

자료: Devlin, Robert and Antoni Estevaderodal(2001); 각국의 원산지 협상안.

다. 기타 주요 특징

1) De minimis

- 원산지 협정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키는 주요 조항이라 할 수 있는 de minimis는 <표 4-3>에 나타난 바와 같이 EU의 특혜원산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de minimis가 다른 지역 특히 NAFTA를 포함한 미주지역의 규정들보다 높음.
 -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특혜원산지 협정안을 보면 de minimis가 모든 품목에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EU의 경우에는 섬유와 의류(textiles and apparel)를 예외 품목으로 정해 놓고 있으나 섬유 총중량의 8%까지는 허용하고 있음.
 - EU-SA(South Africa)의 경우에는 여타 협정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15%를 설정하고 있으나 어류와 갑각류(fish and crustacean), 담배제품(tobacco products), 육류제품, 알코올성 음료에 대해서는 de minimis 적용을 예외로 함.
- NAFTA는 일반적으로 7%의 de minimis를 규정하였으나 유제품(dairy products),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edible products of animal origin), 감귤류의 과실과 주스(citrus fruit and juice), 인스턴트 커피(instant coffee), 코코아 제품(cocoa products), 그리고 에어컨과 냉장고와 같은 일부 기계류(machinery and mechanical appliances)에서는 de minimis 적용을 예외로 함.
 - 특히 섬유제품의 경우에는 de minimis를 계산함에 있어 투입요소비용(cost of the input component)이 아닌 총 중량의 7%를 규정함으로써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
 - Joseph(1993)은 de minimis 적용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인하여 절반 이상의 품목이 영향을 받아 무역창출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없을 것으로 주장함.²⁾

- 아시아의 경우 한국-칠레, 미국-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각각 8%와 10%의 de minimis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AFTA, 방콕협정, 일본-싱가포르 FTA는 de minimis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한국-칠레 원산지협정에서는 농산물품목(HS 1-24)에서 비원산지 재료가 포함될 경우 de minimis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HS 6단위의 세번변경을 명시하고 있음. 미국-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농산물을 제외하고 있음.
 - 한국-칠레, 미국-싱가포르 협정에서 섬유(HS 50-63)의 경우에는 총중량의 8%와 7%를 원산지로 인정하기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2) Roll-up

- Roll-up은 역내에서 CTC, RVC 기준 혹은 중간투입재와 최종재간에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라도 역내원산지로 인정받은 특정 품목의 경우에는 원산지의 지위를 획득하게 하는 조항으로써 세계 각국의 원산지 협정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음.
- EU의 경우에는 모든 특혜원산지 협정에서 전 품목을 대상으로 roll-up 원칙을 인정하고 있음.
- 반면 NAFTA의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roll-up 원칙을 인정함.
 - 자동차 산업에서 roll-up 원칙을 제외시킨 주요 이유는 일본과 같은 역외 국가가 노동임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멕시코에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한 후 비역내산 부품을 수입, 가공을 거쳐 멕시코산 표기를 통해 역내시장으로의 진출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의 요구에 의해 규정됨.

2) Joseph A. LaNasa III(1993), "Rules of Origin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A Substantial Transformation into Objectively Transparent Protectionis,"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34, p. 396.

- 아시아의 경우 한국-칠레, 일본-싱가포르, 미국-싱가포르 등은 roll-up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AFTA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지금까지 살펴본 AFTA의 원산지협정안은 다른 협정안에 비해 역내 보호 수단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간단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의 본래 목적에는 부합되지만 회원국들간 무역분쟁의 발생 여지는 높음.

3) Cumulation

- <표 4-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럽에서는 bilateral cumulation 이외에도 다른 지역의 특혜원산지협정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diagonal cumulation도 사용하고 있음.
 - 1997년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는 PANEURO 모델의 cumulation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EU의 기존 15개 회원국과 불가리아, 체코(Czech Republic),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일랜드, 리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터키 등 총 30개국임.
 - 그 결과 Pan-European 시스템하에서는 참여국간에 거래되는 부품의 경우 역내 원산지로 인정되어 이를 이용하여 생산된 최종재는 특혜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됨.
 - 더구나 EEA(EU-EFTA)와 EU-SA간에는 full cumulation이 적용되어 한 국가(single territory)로서의 개념이 적용됨.
- NAFTA등 미주에서는 유럽과 같이 diagonal cumulation이 인정되지 않고 bilateral cumulation만 인정됨.
 - CARICOM의 경우에는 full cumulation을 인정함.
- 아시아에서는 AFTA, 방콕협정, 일본-싱가포르, 미국-싱가포르, 한국-칠레 모두 bilateral cumulation을 인정하고 AFTA의 경우에는 full cumulation

까지 인정함.

-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미국, 일본과의 원산지 협정에서 outward processing 을 모두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과는 정보기술과 관련된 품목에 대해서는 ISI(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가 함께 적용되고 있음. 그 결과 미국-싱가포르 FTA에서는 특정 IT 부품과 메디컬 장치 등은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될 경우 원산지규정 적용대상이 안됨. 이것은 글로벌 생산 라인의 연계성 및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뿐 아니라,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아세안 국가들의 상대우위 산업으로부터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한 조치임.
- 싱가포르는 제조업 공정(특히 저부가가치 혹은 노동집약분야)의 초기단계를 국내에서 생산한 후 나머지 공정의 일부를 주변국에 아웃소싱하여 다시 이를 수입하고 가공한 후 최종재를 수출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음. 그 결과 협정상의 원산지규정은 최종생산단계만을 지역부가가치(Value Content) 계산에 포함시키는 반면, 싱가포르는 외부공정(Outward Processing)을 인정하여 공정의 일부를 외국에 아웃소싱하기 이전의 초기 생산단계도 최종생산단계와 함께 지역부가가치 계산에 포함시킴.

표 4-3. 협정별 원산지 완화조항의 특징

PTA	De minimis (percentage)	Roll-up	Cumulation	
			Bilateral	Diagonal
PANEURO (50)	10	Yes	Yes	Yes (full in EEA)
PE-(15)	10	Yes	Yes	Yes
EU-SA	15	Yes	Yes	Yes with ACP (full with SACU)
EU-MEX	10	Yes	Yes	No
EU-CHILE	10	Yes	Yes	No
EC-Lebanon	10 (expt chs. 50-63)	Yes	Yes	No
EFTA-MEX	10 (not chs. 50-63)	Yes	Yes	No
EFTA-CHILE	10 (expt chs. 50-63)	Yes	Yes	Yes

〈표 4-3〉 계속

EFTA-Singapore	10 (expt chs. 50-63)	Yes	Yes	Yes
NAFTA	7 (expt in agric. and ind. prod.; 7% of weight in chs. 50-63)	Yes(except automotive)	Yes	No
US-CHILE	10 (expt. in agric. and processed agr. prod.)	Yes	Yes	No
G-3	7 (7% of weight in chs. 50-63)	Yes	Yes	No
MEX-COSTA RICA	7 (expt. in chs. 4-15 and headings 0901, 1701, 2105, 2202)	Yes	Yes	No
MEX-CHILE	8 (expt. in agric. and ind. products; 9% of weight in chs. 50-63)	Yes	Yes	No
MERCOSUR	Not mentioned	Yes(except automotive)	Yes	No
MERCOSUR-CHILE	Not mentioned	Yes	Yes	No
CARICOM	Not mentioned	Not mentioned	Yes	Yes(full)
SAFTA	2	Yes	Yes	No
AFTA	Not mentioned	Not mentioned	Yes	Yes(full)
BANGKOK	Not mentioned	Yes	Yesxviii	No
JAPAN-SINGAPORE	Not available	Yes	Yes	No (Outward Processing allowed)
Australia-Thailand	10 (chs. 50-63: 25 of FOB for developing countries)	Yes	Yes	No
US-SINGAPORE	10 (expt. in various agric. Products; 7% of weight in chs. 50-63)	Yes	Yes	No (OP and ISI allowed)
CHILES-KOREA	8 (not chs. 1-24 unless CS; 8% of weight in chs. 50-63)	Yes	Yes	No
Taiwan-Panama	10 (chs. 50-63: 10 of weight)	Yes	Yes	No
COMESA	Not mentioned	Yes	Yes	No
SADC	10 (not chs. 50-63, 87, 98)	Yes	Yes	No
US-JORDAN	Not mentioned	Not mentioned	Yes	No
US-ISRAEL	Not mentioned	Yes	Yes	No

자료: WTO(2002); 각국의 원산지 협상안

□ <표 4-4>는 유럽, 미주 및 아시아 지역의 특혜원산지 조항의 주요 특징을 비교 요약한 것임.

표 4-4. 지역별 원산지 조항의 주요 특징 비교

유럽지역 (PANEURO 시스템)	미주지역	아시아지역
- 가장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유럽위원회의 특혜원산지 협정안의 조화 노력) - 역내 원산지협정안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1997년부터 PANEURO 모델을 시행 - 역내국가에 대해서는 de minimis, roll-up, cumulation 조항 등을 허용하여 매우 단순하면서도 쉬운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외부적으로는 매우 엄격한 rule 을 지니고 있는 특징을 가짐 - HS 4단위 세번변경 기준 채택 - MC 기준채택 - 부가가치 계산방식이 다른 지역 협정안과는 달리 동일한 ex-works price에 기초하고 있음 -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안이 품목별로 한가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alternative)조항이 마련되어 있음. - 역내국가 간에는 full cumulation 이 적용되어 single territory 개념이 적용	- 엄격하면서도 복잡한 원산지협정으로 인하여 과도한 행정비용이발생하여 역내수출업자들의 상당한 애로 - HS 2단위 세번변경을 기준으로 4단위 변경을 함께 사용 - 미국-요르단, 미국-이스라엘 FTA에서는 특정세번변경기준안을 제시하지 않고 VC에 기초-정치적 목적 - RVC 기준채택 (자동차의 경우 높은 비율 적용) - 부가가치 기준율과 계산방식이 유럽에 비해 매우 다양함. - cumulation의 가장 기본적인이라 할 수 있는 bilateral cumulation만 인정	- 유럽과 NAFTA 모델을 혼용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음 - 다른 협정안에 비해 역내보 호수단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간단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FTA의 본래목적에는 부합되지만 회원국간의 무역분쟁의 발생여지는 높음 - AFTA와 방콕협정의 경우 단지 40%의 RVC를 충족하면 역내원산지로 인정되는 간단한 형태 - HS 4단위의 단순 세번변경 기준 채택 - 일반적으로 bilateral cumulation 을 인정하고 있으나 ASEAN FTA의 경우 full cumulation 을 인정함. - RVC가 일반적이거나 JSEPA 의 경우 MC도 함께 사용

3. 기존 원산지규정의 문제점

- 복잡한 원산지규정은 역내 회원국들에게 여러 가지 행정절차와 제품 생산에 관련된 비용을 유발시킴.
 - 행정비용은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국가마다 상이한 증명절차(mechanism)는 기업들에게 가지각색의 비용을 부담시킴. Koskinen (1983)의 연구에 따르면 EC-EFTA하에서 핀란드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을 받기 위한 행정비용은 수출 거래액에서 1.4~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Holmes & Shephard(1983)는 EFTA에서 EC로 수출할 때 요구되는 문서는 평균적으로 36종류, 페이지 수로는 360쪽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최근에 이루어진 Cadot(2002)의 연구도 NAFTA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행정비용의 문제점을 지적함.
 - 특히, Krueger(1985)에 따르면 미국-캐나다 FTA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캐나다 기업들이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과다한 행정비용으로 인하여 역내산에 따른 관세혜택을 포기하는 기업의 사례도 있다고 함.
 - 물론 행정비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실증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원산지규정이 복잡하면 할수록 원산지 증명과 관련하여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생산관련 비용은 원산지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요구기준(technical criteria)에 의해 발생하는 것임. 즉, 역내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역외국가의 부품(중간재)을 이용하는 대신 역내국의 부품을 사용하는 무역전환이 발생. 이와 관련하여 Suominen(2003)과 Augier, Gasiorek & Lai-Tong(2003), Cadot (2002), Appiah(1999)는 다양한 기술수준의 요구등과 같은 엄격한 원산지규정이 역내국가간 무역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설명함.

4. 원산지증명제도

1) 원산지증명제도의 의의

- FTA에서는 양국이 원산지로 인정되는 상품에 대해서만 특혜관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원산지증명 서류의 세관 제출 필요함.
 - 세관에서는 수입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와 원자재내역서, 원재료원가명세서, 생산공정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원산지 검증을 시행함.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제와 자율증명제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상공회의소 등 공공기관이 수출자로부터 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아 발급하는 방식을 일컬으며, 후자는 수출업자 또는 생산업자가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작성하는 방식임.

2) 원산지제도 규정

- 원산지제도는 실체적 규정(원산지 결정 기준)과 절차적 규정(원산지 증명 및 검증)으로 분류됨.
 - 실체적 규정의 목적은 물품의 실제 생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FTA체결의 효과가 역내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역외국의 무임승차(free riding)를 방지하는 데 있음.
 - 절차적 규정(원산지 증명 및 검증)의 목적은 절차 간소화를 통한 통관 비용 최소화, 우회수입의 방지에 있음.

3) 기관발급제와 자율증명제 비교

- 기관발급제와 자율증명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표 4-5. 기관 발급제와 자율증명제의 특징

형 태	기관발급	자율발급
절차	• 세관의 수출신고 완료 후 상공회의소에서 발급 신청	• 별도 절차 불필요
필요 서류	• 원산지 증명서 양식(별도구매) • 기준별사실확인서 • 인보이스 • 수출신고필증 사본 • 선하증권(B/L)	• 원산지 증명서 양식 (별도 구매 불필요)
소요 비용	• 원산지증명서 구매 비용(싱가포르 건당 \$20) • 각종 서류 준비비용 • 발급기관 방문 소요시간 및 교통비용 • 각종 인건비	• 별도 비용 불필요
소요 시간	• 1건당 평균 2시간 40분 추가 소요	• 별도 시간 불필요
반복 문제	• 수출업체는 동일 물품을 반복 수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일 물품도 반복발급 및 수수료 지급 문제	• 별도 절차 불필요
추가 비용	• 연간 60억원 · 180만 시간 이상의 비용 및 시간소모	-
규제	• 이중규제 - 세관수출신고와 원산지 증명서 신고 - 수출국 원산지증명과 수입국 원산지 증명 검증	• one-stop 규제(수입)

4) 기관발급제와 자율증명제 장·단점 비교

표 4-6. 기관 발급제와 자율증명제의 장·단점

구 분	기관발급제	자율증명제
장 점	- 공신력이 높아 우회수입방지 기대 * 다만, 발급기관의 형식적 발급으로 세관에서는 공신력 불인정(한·일 FTA 협상시 일측 입장)	- 발급절차 신속·편리 - 증명서 발급비용 절감 - 통관절차 간소화 - 무역원활화 - 계약당사자간 자율책임 가능 (수입자와 수출자가 공동책임)
단 점	- 이중규제: 세관의 수출신고절차와 증명서 발급절차 중복 * 대일·대싱·대칠레 수출입 신고건수: 연간 160만건 이상 - 발급절차 복잡 - 물류비용증가 - 수출통관 지체 - 세관의 원산지확인기능 약화로 우회수입에 효율적 대처곤란 - 발급기관이 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에도 책임 추궁이 곤란(수입자만 관세추징 당함)	- 허위증명 가능성 * 보완방안(FTA 관세특례법) - 원산지입증책임제: 수출자가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특혜관세 배제 - 허위증명자 처벌강화: 증명서 허위발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원산지실사검증제: 원산지현지확인제도 등 세관의 원산지 확인기능 강화 - 원산지사전검증제: 원산지성실 신고를 위해 원산지사전판정제도 도입
지 지 기 관	산자부, 대한상공의소(증명서발급기관), 석유협회, 섬유수출입조합	- 재경부, 외교부,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중기협, 전경련, 자동차공업협회, 전자업종, 산업연구원, 주류공업협회, KIEP등 * 한·싱 FTA(제1차): 싱측과 자율증명제 잠정합의

5) 기관발급제와 자율증명제를 채택한 외국사례

- 기관발급제 : 일·싱 FTA, 싱·호 FTA, 아세안 등
- 자율증명제 :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캐·칠 FTA,
미·칠 FTA, 미·싱 FTA, 싱·뉴 FTA,
한·칠 FTA, 싱·EFTA 등 최근 세계적 추세

6) 자율증명제의 비용절감 효과와 보완책

-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비용인 행정비용은 역내 회원국의 기업들에게 가지각색의 비용을 유발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oskinen(1983)의 연구에 따르면 EC-EFTA 하에서 핀란드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을 받기 위한 행정비용은 수출 거래액에서 1.4~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Holmes & Shephard(1983)는 EFTA에서 EC로 수출할 때 요구되는 문서는 평균적으로 36종류, 페이지 수로는 360쪽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 특히, Krueger(1985)에 따르면 미국-캐나다 FTA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캐나다 기업들이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과다한 행정비용으로 인하여 역내산에 따른 관세혜택을 포기하는 기업의 사례도 있다고 함. 이처럼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CAFTA)의 원산지 증명방식은 기관발급제를 채택하여 시행하였으나 과다한 행정비용으로 인하여 기업들의 비용상승, 경쟁력 약화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타파하고자 NAFTA의 원산지 증명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자율발급제를 채택하였고, 미국의 경우 이후에 추진된 다른 FTA 대상국들과의 원산지 증명에서 자율발급제의 시행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음.
- 위에서 열거한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연구결과들과 최근 FTA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기관발급제에서 자율발급제로의 전환 모색은 향후 한국의 원산지 증명방식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음.

- 아래에서는 한·일 FTA에서 원산지자율증명제 도입시 비용절감효과를 직접 계산하여 봄.

가) 비용절감 효과

- 본고에서는 한·일 FTA에서 원산지자율증명제 도입시 비용절감효과를 계산해 냄.
 - 對일 수출비용 절감효과 : 수출신고건수 ('03기준)×증명서발급비용단가
 $489,000\text{건} \times 35,250\text{원} = 17,237,250,000\text{원}$
 - 對일 수입비용 절감효과 : 수입신고건수 ('02기준)×{(서류작성비+교통비+발급기관비용)×3배+수수료·용지대}
 - * 일본의 비용을 한국의 소득수준 대비 3배로 가정
 - $917,000\text{건} \times \{(34,750\text{원} \times 3\text{배}) + 16,840\text{원}\} = 111,039,530,000\text{원}$
 - 양국간 총 절감효과 : 연간 1,282억 원
- 자율증명제는 이러한 비용절감 효과에도 불구하고 허위증명 등과 같은 몇 가지의 단점으로 인하여 일각에서는 우려를 표시. 아래에서는 자율증명제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전개함.

표 4-7. 자율증명제 도입시 소요 항목별 단가

비 용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원)
서류작성비 • 발급신청서(3부) • 기준별사실신고서 • 상업송장 • 수출신고필증	평균소요시간×시간당인건비 2시간×6,250원 *일당 50,000원(1일 8시간)기준	12,500
교통비	1회 평균요금×왕복(2회) (5,000원×2회)	10,000
발급수수료	건당 500원 (일본: 1,050엔(한화 11,410원)) * 환율 : 1086.66	500 (11,410)
용지비	한국 : 없음 일본: 500엔(한화 5,430원)	(5,430)
증명서발급비용 (발급기관)	심사시간×건당평균소요비용 (2시간×6,250)	12,250
합계		35,250

나) 자율증명제의 보완방법

- FTA 이행에 따른 부정수입(우회수입) 방지대책
 -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가 부정수입이 방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님.
 - 세관에서 부정수입을 철저히 단속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원산지검 증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한·일 FTA 모델)
- 원산지입증책임을 수입자 및 수출자가 부담하도록 명문화함.
 - 국내 수입자와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증빙자료를 통하여 원

산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특혜관세의 적용 배제함.

- 세관장의 원산지검증을 거부·기피하거나 검증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혜배제
- 세관장의 원산지심사결과 원산지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의 관세징수시효를 적용하여 관세추징

□ 자료보관의무 도입

-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원산지의 적정여부 확인에 필요한 원·부자재명세서, 원가내역자료, 생산공정자료 등을 5년간 보관토록 하고 위반시에는 특혜배제

□ 특혜관세 적용정지자 지정제도 도입

-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반복적으로 허위 발급한 경우 동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5년간 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 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자에 대한 처벌강화

- 자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때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과실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표 4-8. FTA 대상국 수출입 건수(2002년 기준)

건 수	칠 레	일 본	싱가포르	합 계
수 입	4,000	917,000	100,000	1,021,000
수 출	10,000	489,000	110,000	609,000
합 계	14,000	1,406,000	210,000	1,630,000

* 일본은 2003년 기준

7) 외국의 사례 분석

□ EU 사례

- EU는 기존 기관발급이 우회수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수입자의 의무강화 등 자율발급제 요소 도입 검토중

* EU 집행위원회의 green paper : 의회 제출용 정부 시안(試案) 설명서

- 수출시 원산지 증명은 근거없는 신뢰(a false sense of security) 야기
 - 무역량이 방대해져 관계당국이 건별로 원산지를 제대로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
 - 오히려 수출단계에서의 정부 개입은 수입국 정부나 수입자에게 잘못된 신뢰만 가져와 우회수입 증가
- 당사국간 행정적 협조 실패
 - 원산지 확인을 위해 수입국 정부가 수출국 정부에게 원산지 확인을 요구하지만 행정적 협조가 원활하지 않음
- 허위원산지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
 - 원산지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도 수입자의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신뢰는 정당(in good faith)하므로 우회수입에 대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

□ 각국 사례

- 기관발급을 시행하던 EU의 경우 자율증명을 재검토하고 있음.

표 4-9. 원산지 증명의 각국 사례

	기 관 발 급	자 율 증 명
각국 사례	EU(재검토 중), 일본, ASEAN	NAFTA, 미국, 캐나다,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보편화 추세

□ 국가별 대응방안

-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교역촉진과 수출업계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자율 증명제를 추진하고 있음.

표 4-10 원산지 증명의 국가별 대응방안

국 가	현 황	대 응 방 안
싱가포르	미·싱 FTA(자율발급) 싱·뉴 FTA(자율증명) 싱·EFTA (자율증명) 일·싱 FTA(기관발급) * 기관발급의 엄격 운영 (업체등록제, 정기검사, 보완자료제출 요구)	• 자율발급 추진
일 본	• 기관발급 원칙 고수	• 자율발급 추진

제5장 FTA 원산지 협상에서의 시사점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무역협정은 역내산업의 보호를 통한 우회 수입의 방지와 교역확대, 나아가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산지 규정을 복잡하면서 엄격하게 그리고 까다로운 절차 등을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발표되고 있는 원산지 관련 연구들을 보면 복잡한 원산지 규정이 오히려特惠무역협정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림.
- 원산지 협정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측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행정적 비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유럽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역내 원산지 협정안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1997년 이후부터 PANEURO 모델을 시행하고 있음.
 - 특히 PANEURO 모델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보면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역외국에게는 폐쇄적 형태를 가짐.
 - NAFTA 모델의 경우 Krueger(1985)가 지적한 바와 같이 엄격하면서 복잡한 원산지 협정으로 인하여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하여 역내 수출업자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음.
- 원산지 규정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特惠무역협정에 따른 혜택을 제 3국이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HS 코드가 이용되고 있음.
 - 그러나 HS 코드는 상품의 분류를 위한 코드이지 원산지를 규정하기 위한 분류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간 원산지협정문은 복잡한 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동아시아 역내국들은 동아시아 FTA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원산지

와 관련된 상품분류 코드에 대해 합동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원산지품목분류표(가칭)의 작성은 역내 수출기업들의 여러 가지 행정적 비용은 물론 개방적인 무역협정을 역외국에 표방함에 따라 원산지규정을 시행하는 원래의 목적 즉, 역내교역확대, 외국인투자유입, 경쟁력 강화 등을 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세계 각국의 원산지 협정안을 보면 크게 2가지의 유형 즉 PANEURO 모델과 NAFTA 모델로 나눌 수 있으며 아시아는 고유의 특혜원산지 모델이 없고 EU의 PANEURO 모델과 NAFTA 모델을 병행해서 사용되고 있음.

- 아시아의 경우 EU의 PANEURO 모델과 NAFTA 모델을 함께 사용하고 있지만 NAFTA의 원산지 모델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아시아 국가들의 지역무역협정(RTA)이 주로 미국을 포함한 미주국가들과 체결되었기 때문임. 따라서 유럽 국가들과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EU의 PANEURO 모델의 사용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하지만 최근 아시아 국가들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가 다각적으로 진행 중에 있어 PANEURO와 NAFTA 모델과 같이 아시아 국가의 원산지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 결국 아시아 국가만의 원산지 모델이 역내 특정국가간의 무역협정에서 대두되어 고유의 모델로 발전되기보다는 동아시아국가들이 참여한 고유의 통일 원산지모델의 구상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첫 과제로써 원산지품목분류표 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동아시아 국가들은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특정 역내 국가들간의 원산지 협정안이 지역차원에서 일반화가 되면 이는 동아시아 FTA에 원산지 협상에서 국가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뿐만 아니라 무역자유화 효과를 반감시키는 또 다른 장애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임.

□ FTA 원산지 규정은 크게 역내무역 활성화와 역외경제권으로의 개방화조

치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역내 교역확대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원산지 판정을 위한 기준으로 세 번변경 기준(CTC),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 기준(technical requirement)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역외경제권으로의 개방화 조치를 위해서는 최소허용조항(de minimis), roll-up(or absorption) 원칙, 누적(cumulation) 조항을 사용할 수 있으며 특혜원산지 협정으로 인한 행정비용, 생산비용 그리고 무역전환등과 같은 부정적 경제효과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도 이들 조항을 포함시켜야 함.
 - 특히 PANEURO 모델에서처럼 원산지 인정을 규정하는 조항을 하나만 명시하지 않고 대안조항도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행정비용은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비용으로 원산지 규정이 복잡하면 할수록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할 것이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생산비용은 원산지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요구기준(technical criteria)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될 수 있는 한 특정공정기준(technical requirement)은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임.
 - 누적(cumulation) 조항은 bilateral cumulation, diagonal cumulation, full cumul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FTA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PANEURO 모델과 같이 full cumulation 개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부가가치(Value Content)의 경우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PANEURO 모델인 MC(Import Content)를 기준으로 45%, NAFTA 모델인 RVC의 기준으로 50%가 평균적으로 적당할 것으로 보임.
 - 지역부가가치를 너무 높게 설정할 경우 역내 중간투입재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등 부정적 측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De minimis는 PANEURO와 NAFTA 원산지 규정을 고려할 경우 10%가

적당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de minimis 적용에 대한 예외조항을 최소화 하여 역내 무역창출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어야 함.

- Roll-up은 역외국가들이 역내 경제권 중에서 노동임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가에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역내시장에 진입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조항이나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와 개방형 경제권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과 관련하여, 기관발급으로 인한 과도한 행정비용의 발생은 기업들의 부담을 증가시켜 특혜무역 협정에 따른 편익을 최대한 활용할 수 없게 만들. 따라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자율발급제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자율증명제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허위증명과 같은 문제점들은 원산지입증 책임을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부담하도록 명문화시키거나 자료보관의무 등을 도입하면 해결 가능할 것임.

참고문헌

각국의 원산지 협정안.

Cadot, Oliver, Jaime de Melo, Antoni Estevadeordal, Akiko Suwa-Eisenmann and Bolormaa Tumurchudur. 2002. "Assessing the Effect of NAFTA's Rules of Origin." Mimeo.

Holmes, P. and G. Sheppard. 1883. "Protectionism in the Economic Community." International Economics Study Group. 8th. Annual Conference.

Koskinen, Matti. 1983. "Excess Documentation Costs as a Non-Tariff Measure: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Documentation Costs." Working Paper. Swedish School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Krueger, Anne O. 1993. "Free Trade Agreements as Protectionis Devices: Rules of Origin." NBER Working Paper No. 4352. Cambridge, MA: NBER.

World Trade Organization. 2002. "Rules of Origin Regime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Executive Summary

Rules of Origin (ROO) in Free Trade Agreements and Their Implications

Ho Kyung Bang

The rules of origin (ROO) play a major role in the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and constitute an indispensable component of any discriminatory arrangements. The accelerated proliferation of both preferential agreements and selective restrictive measures indicates that the importance of ROO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coming years.

The ROO i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non-preferential and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Preferential ROOs are used to determine whether certain products originate in the preferred receiving country or trading area and, hence, qualify for the trade preference. As a result, preferential ROOs can be used as trade barriers.

The ROO can affect trade by inflicting two types of costs - production and administrative costs. Therefore, in the presence of a stringent ROO, the potential for RTAs to boost intra-trade between the members will likely be moderated by the rise in the cost of inputs. On the other hand, a less complicated ROO stimulates trade between regional partners by reducing the transactions costs of such trade.

This paper, thus, presents a comparative analysis of ROO in some of the main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in Europe, the Americas, and Asia.

方浩慶

중앙대학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연구원(現, E-mail: bassgu@kiep.go.kr)

著書 및 論文

「산업내 무역지수를 이용한 동북아 분업구조분석」(2003)

「동북아 역내교역의 추이 및 특성」(『동북아 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공저, 2003) 외

정책자료 04-11

FTA 원산지규정의 주요 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2004년 12월 24일 인쇄

2004년 12월 30일 발행

발 행 인 安 忠 榮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 행 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1179 FAX: 3460-1144

인 쇄 (주)예원기획 전화 745-8090 대표 강대원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複製를 금함】

ISBN 89-322-2086-7 94320
89-322-2068-9(세트)

정가 5,000원

Rules of Origin (ROO) in Free Trade Agreements and Their Implications

Ho Kyung Bang

원산지규정이 FTA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주된 이유는 원산지규정이 각 국가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불명확성과 복잡성, 그리고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상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산지규정은 협정안이 복잡할수록 역내 회원국들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와 제품생산에 관련된 비용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3460-1178, 1179 FAX: 3460-1144



정가 5,000원